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64
----------	------

2024년 6월 2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5월 27일, 홍국표 의원
-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국표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급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4년 5월 27일 홍국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864호로 발의되어 2024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교육부의 「2022학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987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급식은 직영급식 11,751교(98%), 위탁급식 236교

(2%)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531만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¹⁾.

[표-1] 2022학년도 학교급별 급식현황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6,158	6,158	100	2,672,550	2,671,157	99.9	6,148(99.8)	10(0.2)
중학교	3,262	3,262	100	1,349,153	1,345,410	99.7	3,237(99.2)	25(0.8)
고등학교	2,375	2,375	100	1,271,322	1,267,759	99.7	2,175(91.6)	200(8.4)
특수학교	192	192	100	27,590	27,407	99.3	191(99.5)	1(0.5)
합계	11,987	11,987	100	5,320,615	5,311,733	99.9	11,751(98%)	236(2%)

*출처: 교육부 「2022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초·중·고·특수학교)

○ 그러나 이러한 학교급식은 1996년 위탁급식제도 도입 등으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리과정 중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높아 각종 사고와 여러 질환 등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어왔으며,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최초로 질병성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대규모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조리흙(cooking fumes)’에 장시간 노출되는 급식실 환경이 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²⁾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보건 점검을 실시하고³⁾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 환기 가이드」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며⁴⁾,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노후 급식시설·

1) 교육부, 「2022학년도 학교급식 실시현황, 2023.9.11.

2) 매일노동뉴스, ‘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2021.4.6., 오마이뉴스, 17년 급식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이 죽음엔 ‘배경’이 있다, 2022.6.7.

3) 노컷뉴스, 급식조리사 폐암 산재에...노동부, 교육청·학교 현장점검, 2021.12.7.

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2021.12.8.

기구(10년 이상) 및 지하 조리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T)를 구성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건강검진 공통 지원 기준(검진대상, 방식, 지원 범위 등)을 마련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표된 ‘전체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2020~2024년)’에 따르면 2023년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은 1,505건, 승인은 1,413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17배 증가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승인 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및 급식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⁵⁾.

-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전국 9,043개교 중 약 71%에 해당하는 6,385개교의 경우 향후 3년 이내에 개선이 완료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⁶⁾,

동 조례안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국회 강득구 의원실, 지지부진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4개 교육청만 목표치 달성 p.7, 2024.4.5.

6) 교육부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p.8, 2023.3.14.

[표-2] 학교급식 종사자 폐질환 포함 전체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

연도	합계(건)		
	신청	승인	불승인
2020	694	652	42
2021	967	928	39
2022	1,186	1,103	83
2023	1,505	1,413	92
2024.3.	290	266	24

*출처: 근로복지공단, 국회 강득구 의원실(공단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205개 직종분류 중, 직종명 '주방장 및 조리사(직종코드 441)'기준, 사업장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자료 기준으로 통계 추출)

[표-3]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교)

교육청	전체 학교	개선 대상	'22년(실적)		'23년	'24년 이후	
			개선	개선율(%)	개선	개선	계획
전국	11,389	9,043	769	8.5	1,889	6,385	
서울	1,384	1,298	15	1.2	49	1,234	· 27년 종료예정(23년 시범사업(4교)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수립)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p.8, 2023.3.14.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6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조례안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 검진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정의(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급식종사자’를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5호).

-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은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구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라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종사자’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며,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과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서’ 등 각종 정책에서도 학교급식관계자(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실무)사)와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실무)사)를 달리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서 교육, 연수, 처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급식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반면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의 급식종사자 현황에 영양교사를 포함하고 있고, 영양교사의 경우 식재료, 시설·설비, 조리, 배식 등 급식실 위생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현재 법률상 급식종사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부처별로 이를 달리 혼용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적용 실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교원을 포함시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교육감에게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항), 이를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2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급식종사자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3항)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책무규정은 「산업보건안전법」⁷⁾ 및 「학교급식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발전계획⁸⁾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여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책무규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 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근무여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나 불가피한 교육청의 예산사정 및 학교시설 여건 등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 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과-6039.,2024.6.5).
- 그러나 동 조례안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7)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여 학교급식 운영 방식과 예산·인력관리·행정지원에 관한 기준, 식재료 구매 관리와 학교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목표사업을 설정하고, 학교급식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각 사업별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실천 계획(소요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9)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체에게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2항 또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 지원(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기기설, 공기 질, 유해 물질 차단, 안전사고 방지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학교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여러 대책들이 발표된 가운데¹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2년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에서 급식실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배치, 조리기계·기구 및 보관실 배치 구역을 구분하는 기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¹¹⁾.

- 또한 교육부도 2023년도에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지원예산을 보통교부금(학교 1교당 1억원 예정)에 반영하고 지하 조리시설 개선 지속 추진하기로 한 상황입니다¹²⁾.
- 따라서 동 조항은 정부정책 발표에 따라 급식시설의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MBC 뉴스, “기말고사 보던 7백명 대피”...고교 급식실에 화재, 2023.11.28. KBS News,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 가스폭발로 3명 부상, 2022.1.3.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급식실 시설에 관한 안전지침」, 2012.12.

12)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2023.3.14.

5)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¹³⁾.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2023~2026)」을 살펴보면¹⁴⁾, 현재 학교급식 전담인력의 적정 운영을 위해 현재 영양(교)사 및 조리사는 급식학교당 1명씩 배치(영양교사:공립 3명 급식교 영양교사 2명 배치(6교))하고, 조리실무사의 경우 급식 인원수에 맞는 배치인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표-4]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기준

(단위: 명)

조리실무사 배치인원수	급식 인원 수		
	초등학교	중·각종중학교	고·각종고·특수학교
1	1~149	1~149	1~137

13)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서울시교육청, 「제3차 학교급식 중기 발전계획(2023~2026)」, 2023.11.22.

2	150~299	150~299	138~274
3	300~612	300~503	275~461
4	613~817	504~671	462~615
5	818~984	672~839	616~768
6	985~1,149	840~1,002	769~918
7	1,150~1,314	1,003~1,149	919~1,052
8	1,315~1,479	1,150~1,294	1,053~1,185
9	1,480~1,644	1,295~1,439	1,186~1,317
10	1,645~1,809	1,440~1,584	1,318~1,450
11	1,810~1,974	1,585~1,729	1,451~1,583
12	1,975~2,139	1,730~1,874	1,584~1,716
13	2,140~2,304	1,875~2,019	1,717~1,848

*급식인원: 학생수+교직원수+공동조리교 학생 및 교직원수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중기 발전 계획서」 p.30.

- 따라서 동 조항은 이러한 학교급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6) 부칙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 부칙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이하 ‘학교급식 운영 조례’) 중 제3조제5항¹⁵⁾과 제11조¹⁶⁾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부칙을 통해 다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같은 입법형식을 대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제11조(조리장의 공기 질 개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에 적절한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한다.

- 이는 하나의 조례에 통합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분산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조례의 해당사항을 정리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과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는 입법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먼저 부칙 안 제2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3조제5항¹⁷⁾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를 통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것인바, 동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목적, 책무 등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부칙 안 제2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11조는 동 조례안과 동일하게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 등의 장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 부칙을 통해 삭제하고자 하는 규정은 모두 동일한 입법형식인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두 조례(안) 모두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항을 내용적인 면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 또한 인정되는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타 의견

- 금번 정례회에는 동 조례안과 내용과 목적면에서 유사한 「서울특별

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과정에서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동일하게 발의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두 조례안의 세부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이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5] 제324회 정례회 급식실 관련 유사 조례 비교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3조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수립 마련 - 교육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편의 지원 	제3조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조리환경 조성 -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 마련 -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 (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환기시설, 실내 공기 질 측정 장치, 유해 물질 차단 설비 설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제7조 (급식실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 조리종사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 지속적 개선 및 필요한 급식기구 확충 - 급식실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 등을 준수
제6조 (급식종사자 근무 여건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실시 -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 	제10조 (건강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
		제11조 (휴게실 및 휴게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를 포함하여 휴게시설을 설치·운영
		제12조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

*출처: 서울시의회 의안정보시스템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 동 조례안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지원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뿐만이 아닌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조리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두 조례안의 의결과정에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는 동 조례안을 의결하고, 향후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기해 주실 것을 요청함(최유희 위원).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4. “조리장”이란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5. “급식종사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리장 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2. 조리장 내 실내 공기 질 측정장치 설치

3.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차단을 위한 설비의 설치

4.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5.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급식종사자 근무 여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